



음성 출력용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6가단5052916 손해배상(기)

원 고 별지 원고 정정 목록 기재와 같다.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신인수, 장재원

피 고 1. 케이티 노동조합

대표자 위원장 정윤모

2. 정윤모

3. 한호섭

피고들 주소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정용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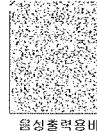
변 론 종 결 2018. 11. 20.

판 결 선 고 2018. 11.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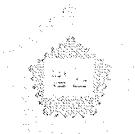
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별지 '원고 정정 명단' 기재 순번 1 내지 30, 32 내지 50 기재 원고들에게 각 300,000원, 같은 명단 기재 순번 31, 51 내지 686 기재 원고들에게 각 2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2. 25.부터 2018. 11. 27.까지는 연 5%, 그





문서 출력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별지 '원고 정정 명단' 기재 순번 1 내지 50 기재 원고들에게 각 300,000원, 같은 목록 순번 51 내지 686 기재 원고들에게 각 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2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완체일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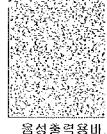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피고 케이티 노동조합(이하 '피고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케이티(이하 '케이티'라 한다) 소속 근로자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노동조합이고, 피고 정윤모는 피고 노동조합의 위원장, 피고 한호섭은 사업지원실장으로 각 활동한 사람이다.

2) 원고들은 케이티의 근로자로서 피고 노동조합의 조합원이었는데, 아래 나.항에서 보는 이 사건 각 노사합의 이후 케이티가 취한 일련의 조치에 따라 업무지원 CFT 부서로 전보되거나(별지 '원고 정정 명단' 중 순번 1 내지 30, 32 내지 50 기재 원고들이 이에 해당), 명예퇴직을 한 사람들(같은 명단 중 순번 31, 51 내지 686 기재 원고들이





음성 출력용



이에 해당)이다.

나. 이 사건 각 노사합의의 체결

1) 피고 노동조합은 2014. 4. 8. 케이티와 사업합리화 계획, 특별명예퇴직의 시행, 복지제도의 변경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노사합의를 하였다(이하 '1차 노사합의'라 한다). 그 당시 피고 노동조합이 1차 노사합의와 관련하여 사전에 조합원총회를 개최하거나 조합원들의 의견을 청취한 바는 없다.

▣ (사업합리화) 노사합의서

주식회사 케이티와 피고 노동조합은 회사의 경영효율화를 위한 사업합리화 계획을 협의하고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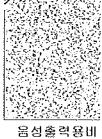
- 회사의 사업합리화 계획에 의거 Mass영업·개통/AS·Plaza 분야 업무를 폐지한다. 단, 회사 경영상황에 따라 축소 운영할 수 있다.
- 사업합리화 조치에 따라 해당 분야 임류자에 대해서는 직무전환 교육 후 접점지역으로 재배치한다. 단, 세부기준은 별도 합의 시행한다.
- 인사규정상의 사무/기술직렬은 일반직렬로 통합한다.

▣ (특별명예퇴직) 노사합의서

주식회사 케이티와 피고 노동조합은 종사원의 요구를 반영하고 직원들의 새로운 인생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특별명예퇴직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기로 합의한다.

- 특별명예퇴직을 2014. 4. 30.자로 시행한다.
 - 특별명예퇴직은 근속 15년 이상인 직원을 대상으로 하되, 정년 잔여기간이 1년 미만인자는 제외한다.
 - 특별명예퇴직 유형은 퇴직형과 재취업형 2가지로 하며, 직원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 퇴직희망자가 재취업형을 선택하는 경우 직무연관성을 고려하여 2년간의 그룹사 취업을 알선한다.
- 정기명예퇴직 제도는 2014. 5. 1.자로 폐지한다. 단, 2014년 1분기 명예퇴직자는 금번





문서번호



특별명예퇴직 조건에 준하여 적용한다.

- 임금피크제는 2015. 1. 1.자로 도입한다. 단, 적용연령 및 감액율 등 세부기준은 추후 합의 시행한다.

▣ (복지제도변경) 노사합의서

주식회사 케이티와 피고 노동조합은 어려운 경영현실을 감안하고 회사와 직원의 상생을 위해 복지제도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시행하기로 합의한다.

- 대학생 자녀학자금 지원/대부제도 및 본인학자금 지원제도를 2014. 6. 1.자로 폐지한다.
- 중학교 학자금 지원제도를 폐지하며, (구)kt/ktf 이원 운영중이던 고등학교 학자금 지원제도는 kt 기준으로 통합한다.
- 공통포인트(160만 포인트)를 130만 포인트로 조정하고, 인재육성포인트 및 교육보조비는 폐지한다.
- 변동포인트를 신설하여 전년도 영업이익과 개인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이하 생략)

2) 케이티는 특별명예퇴직의 시행과 관련된 1차 노사합의에 근거하여 2014. 4. 8. 실근속기간이 15년 이상인 직원들을 대상으로 특별명예퇴직시행 계획을 공고하는 한편, 그 무렵 사업합리화 조치 등에 따라 전국에 소재한 지사의 통·폐합 및 그에 따른 인력 재배치를 실시하였고, 배치되지 못한 인원들에 대해서는 인사고과 등을 반영하여 지역본부에 재배치하거나 당시 신설된 업무지원 CFT 부서로 전보하였다.

3) 한편, 피고 노동조합은 2015. 2. 24. 케이티와 정년연장 및 임금피크제 등의 구체적인 시행방안에 관하여 노사합의를 하였다(이하 '2차 노사합의'라 하며, 1차 노사합의와 통틀어 '이 사건 각 노사합의'라 한다). 2차 노사합의 당시에도 1차 노사합의 때와 마찬가지로 피고 노동조합은 조합원총회를 개최하는 등으로 사전에 조합원들의 의견을 청취하지는 않았다.

다. 관련 규정



증정 출력용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16조(총회의 의결사항)

-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3. 단체협약

제22조(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균등하게 그 노동조합의 모든 문제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다만, 노동조합은 그 규약으로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조합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 피고 노동조합 규약(이하 '이 사건 규약'이라 한다)

제10조(조합원의 권리) 조합원은 본 규약에 따른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단, 규약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권리를 제한받지 않으며, 징계를 받은 조합원에 대해서는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 ① 조합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1. 조합의 활동에 동등하게 참여할 권리
3. 조합운영에 동등한 발언권 및 의결권
6. 기타 조합원으로 권익을 보호받을 권리

제21조(의결사항) 조합원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

제61조(단체교섭)

- ① 본 조합은 단체교섭의 당사자이며, 본 조합이 교섭대표 노조가 되는 경우 위원장은 단체교섭 및 체결권은 있으나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체결하여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22(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문서출판용

이 사건 각 노사합의의 내용이 사업합리화에 따른 전보발령, 특별명예퇴직의 시행, 복지제도의 축소 등 근로조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었음에도, 피고들은 단체 협약 체결 과정에서 조합원들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한 노동조합법 제16조, 제22조 및 이 사건 규약 제10조, 제21조 등을 위반하여 조합원들의 의사를 수렴하기 위한 조합원 총회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또한, 피고들은 밀실에서 노사합의를 한 결과 근로조건을 후퇴시킴으로써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법률행위를 자행하여 민법 제103조를 위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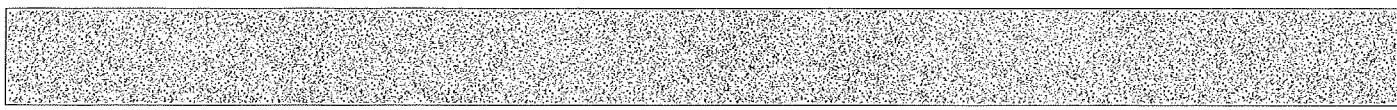
위와 같은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의 근로조건이 심각하게 훼손되었을 뿐만 아니라 단결권 및 조합의 의사 형성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당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민법 제760조에 따른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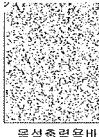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노동조합법 제22조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균등하게 그 노동조합의 모든 문제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단체협약은 노동조합의 개개 조합원의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을 직접 결정하는 규범적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단체협약의 실질적인 귀속주체는 근로자이고, 따라서 단체협약은 조합원들이 관여하여 형성한 노동조합의 의사에 기초하여 체결되어야 하는 것이 단체교섭의 기본적 요청이다. 노동조합법 제16조 제1항 제





문서출처용비



3호는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을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하여 노동조합 대표자가 단체교섭 개시 전에 총회를 통하여 교섭안을 마련하거나 단체교섭 과정에서 조합원의 총의를 계속 수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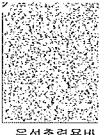
그리하여 노동조합이 조합원들의 의사를 반영하고 대표자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업무 수행에 대한 적절한 통제를 위하여 규약 등에서 내부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등 대표자의 단체협약체결권한의 행사를 절차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그것이 단체협약 체결권한을 전면적·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닌 이상 허용된다(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0다24534 판결 참조).

이러한 헌법과 법률의 규정, 취지와 내용 및 법리에 비추어 보면,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위와 같이 조합원들의 의사를 결집·반영하기 위하여 마련한 내부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한 채 조합원의 중요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에 관하여 만연히 사용자와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 그 단체협약의 효력이 조합원들에게 미치게 되면, 이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조합원의 단결권 또는 노동조합의 의사 형성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6다205908 판결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을 살펴본다.

이 사건 규약이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을 조합원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하고 있고(제21조 제4호), 노동조합의 대표자로 하여금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단체협약을 체결하도록 정하고 있음(제61조 제1항)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에 따르면, 피고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그 의견을 반영하여 단체교섭을 할 수 있고, 단체교섭을 하는 과정에서도 사용자와 실질적인 합





음성출역용바

의에 이르기 전까지는 총회의 의결을 거칠 수 있다고 보이고, 달리 위 규약의 조항들이 노동조합 대표자가 사용자와 단체협약의 내용에 합의한 후 단체협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다시 협약안의 가부에 관하여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에만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하였다고는 해석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규약 제21조와 제61조 등이 노동조합 대표자의 단체협약체결권한을 전면적·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으로서 노동조합법 제29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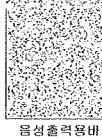
그렇다면 이 사건 규약 제21조 등은 단체협약의 체결에 있어서 조합원들의 의사를 반영하고 노동조합 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 업무 등에 관한 적절한 통제를 위하여 대표자의 단체협약체결권한 행사를 절차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으로서 유효하다.

그런데도 피고 노동조합의 대표자인 피고 정윤모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은 채 이 사건 각 노사합의를 체결함으로써 이 사건 규약을 위반하였고, 피고 한호섭은 당시 사업지원실장으로서 위원장인 피고 정윤모를 대리하여 이 사건 각 노사합의서에 서명함으로써 이 사건 각 노사합의의 체결 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노동조합의 의사 형성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조합원들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피고 노동조합은 민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피고 정윤모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인 조합원들에게 가한 손해를 피고 정윤모와 공동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조합원인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가)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노사합의는 개별적인 사항들에 관하여 상시적으로 체결되는 것으로서 정기적으로 체결되는 단체협약과 구분하여야 하고, 이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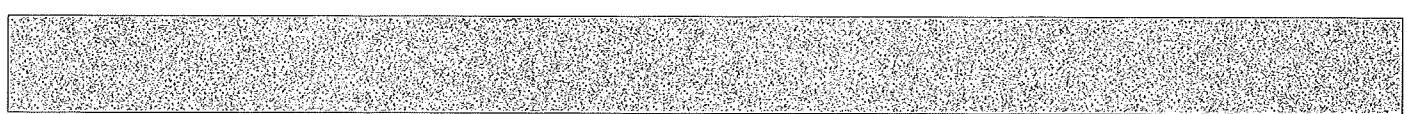
음성출판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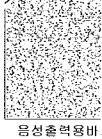
게 상시적으로 체결되는 노사합의의 경우에는 단체협약 체결 전에 조합원총회를 거쳐야 한다는 노동조합법 및 이 사건 규약의 관련 규정들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단체협약은 노동조합이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사항에 관한 협정(합의)을 문서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날인 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협정(합의)이 반드시 정식의 단체교섭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에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에 관한 합의가 노사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서 성립되었더라도, 당사자 쌍방이 이를 단체협약으로 할 의사를 문서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의 대표자가 각 노동조합과 사용자를 대표하여 서명날인 하는 등으로 단체협약의 실질적·형식적 요건을 갖추었다면 이는 단체협약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3다27429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더하여 상시적으로 체결되는 노사합의와 정기적인 단체협약을 구분하기가 용이하지 않은 점, 피고 노동조합 스스로 제정한 이 사건 규약에 의하더라도 단체협약과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노사합의를 구분하고 있지 않은 점, 반드시 단체협약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단체협약으로서의 실질적·형식적 요건을 갖추었다면 이를 모두 노동조합법상 단체협약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각 노사합의 역시 노동조합법 제16조 및 이 사건 규약 제21조 등에서 조합원총회의 의결을 요구하는 단체협약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노사합의와 같이 상시적으로 체결되는 단체협약의 경우에는 정기적인 단체협약과 달리 조합원총회의 의결 없이 이를 체결하는 관행이 있어 됐으므로, 이 사건 각 노사합의를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직권으로 체결하는





음성출판용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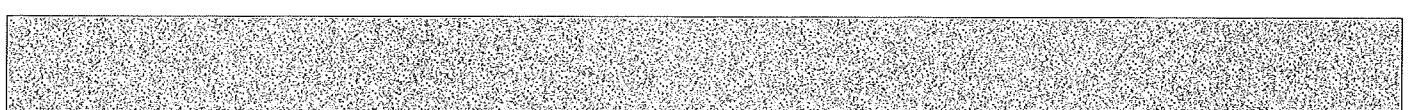


것에 대한 조합원들의 묵시적 수권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규약 위반에 대한 노동조합 대표자 등의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피고들 주장대로 피고 노동조합이 특정 현안에 대하여 수시로 체결하는 단체협약의 경우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캐이티와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왔고, 이에 대하여 조합원들이 그 절차적 적절성을 문제 삼거나 의문을 표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노사합의를 체결하면서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것에 대하여 피고들의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먼저, 이 사건 각 노사합의는 지사 통폐합 및 이에 따른 배치전환, 특별명예퇴직 및 임금피크제의 시행, 각종 복지제도의 축소·폐지 등 조합원들의 근로조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다수 포함하고 있어 정기적인 단체협약에 비하여 그 중요성이 결코 덜하지 않다. 따라서 피고 정윤모 등 노동조합 지도부로서는 이 사건 각 노사합의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기적인 단체협약 못지않게 절차적 민주성을 강화할 방안을 신중하게 고민하였어야 함에도 그러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채 이 사건 각 노사합의를 체결하였다.

만일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노사합의의 경우 일률적으로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더라도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노동조합 지도부로서는 정기적인 단체협약으로 정하여야 하는 중요한 사항들을 보다 절차가 간편한 상시적인 노사합의로 처리하려는 경향이 생겨날 수 있다. 이것은 이 사건 규약 제21조 등에서 조합원들의 의사를 반영하고 노동조합 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 업무 등에 대한 적절한 통제를 위하여 대표자의 단체협약체결권한 행사를 절차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둔 취지에 어긋난다.





온선출력용



피고 노동조합 지도부가 이 사건 각 노사합의를 체결함에 있어 총회 등을 통하여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노동조합법 제16조 및 이 사건 규약 제21조 등은 조합원 총회에서 최종적으로 의결될 사항의 내용이나 결과를 떠나 조합원들이 조합 내부의 의사 형성 과정에 직접 참여 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들로 해석된다. 따라서 설령 특정 현안에 대하여 상시적으로 체결되었던 단체협약의 경우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케이티와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온 사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노사합의의 내용처럼 조합원들의 근로조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면 피고 노동조합 지도부로서는 노동조합법 및 이 사건 규약 제21조 등에 따른 조합원들의 의견수렴절차를 거쳤어야 한다.

다) 피고들은 또한, 이 사건 각 노사합의를 체결하면서 조합원 총회는 아니더라도 노사상생협의회, 전국조직국장회의, 중앙위원회 및 산하조직 대표자회의, 확대간부회의 등의 내부 의견수렴절차를 거쳤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들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의견수렴절차는 극소수의 간부들을 대상으로 한 것에 불과하여, 이것만으로는 조합원들의 의사를 수렴하는 절차를 거친 것으로 평가할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이 사건 각 노사합의의 체결 경위, 이 사건 각 노사합의에 따라 변경된 구체적인 근로조건의 내용, 비정기적으로 체결되는 노사합의의 경우 피고 노동조합이 대체로 조합원 총회의 의결 없이 노사합의서를 작성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대한 조합원들 및 케이티 측의 태도, 이 사건 규약 등이 정한 절차를 거쳤을 경우 예상되는 노



증정서류용



사합의의 결과, 기타 피고 노동조합의 절차 위반의 중대성 내지 그로 인하여 조합원들의 절차적 권리가 침해된 정도 등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면, 피고들이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는 재직 중인 원고들(별지 '원고 정정 명단' 중 순번 1 내지 30, 32 내지 50 기재 원고들)에 대해서는 각 300,000원, 명예퇴직을 한 원고들(같은 명단 중 순번 31, 51 내지 686 기재 원고들)에 대해서는 각 2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정신적 손해 발생에 따른 위자료로 별지 '원고 정정 명단' 중 순번 1 내지 30, 31 내지 50 기재 원고들에게 각 300,000원, 같은 명단 중 순번 31, 51 내지 686 기재 원고들에게 각 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다음날인 2015. 2. 25.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11. 2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깊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자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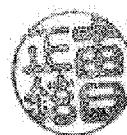
4. 결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정현

조정현





증정 출력용

원고 정정 명단

원고순번	성명	주소	2015.2.24기준 재직여부
1	곽노익		
2	김희숙		
3	박경수		
4	송기정		
5	신영중		
6	유연수		
7	이삼국		
8	정이제		
9	조광승		
10	황인호		
12	권창식		
13	구현숙		
14	김경순		
15	김경숙		
16	김꼼순		
17	김금남		
18	김순근		
19	김용기		
20	이인재		
21	이영복		
22	이종원		
23	임양중		
24	최상윤		
25	류상희		
26	우병준		
27	정양호		
29	오영근		
30	오용택		
31	장진희		
33	김형대		
34	김상원		
36	권문수		
37	김태영		
38	김정선		
39	이강한		
40	김승천		
41	문선희		
42	신용학		
43	재찬열		
44	김영조		
45	임흔걸		
46	백동현		
47	구상수		
48	지영철		
49	정성관		
50	이범관		
51	안상규		
52	김경대		
53	한관희		
54	강기자		
55	김복경		
56	강영구		
57	강미애		



문서 출력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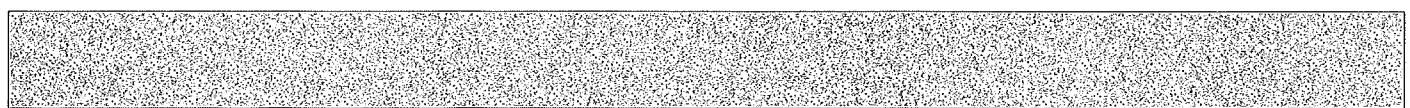


58	김삼봉
59	김성구
60	김성경
61	김성대
62	김수연
63	김순천
64	김신국
65	김우영
66	김자권
67	김점석
68	김정문
69	김성학
70	김수진
72	김주호
73	김진국
74	김장날
75	김태운
76	김한종
77	김호록
78	김희순
79	고구승
80	고남수
81	고명복
82	고성호
83	고암호
84	고용부
85	고유진
86	김영봉
87	김우중
88	곽성열
89	곽영자
90	곽하영
91	구자민
92	구형희
93	구현기
94	권상봉
95	권영기
96	권영필
97	권오혁
98	권중규
100	권충성
101	권진한
102	권혁민
103	금창이
104	기우면
105	기윤
106	김건우
108	김경웅
110	김구식
111	김금진
112	김기영
113	김길용
114	김강진
115	김대근
116	김대식
117	김예호
118	김도관
119	김도현



음성출력용B

120	김동수
121	김동천
122	김동쪽
123	김득관
124	김민정
125	김명수
126	김명수
127	김명철
128	김문기
129	김분바
130	김분영
131	김운찬
132	김영수
133	김영기
134	김영우
135	김별주
136	김보수
137	김봉천
138	김상신
139	김상인
140	김상준
141	김석배
142	김선업
144	김성광
145	김성장
146	김성수
147	김성자
148	김승기
149	김선록
150	김영관
151	김영복
152	김영진
153	김영민
154	김영재
156	김영희
157	김종대
158	김봉수
159	김봉목
160	김봉인
161	김봉호
162	김봉환
163	김현정
164	김유백
166	김이태
167	김인수
168	김인숙
169	김인자
170	김인철
171	김재길
173	김재운
174	김재유
176	김철국
177	김정미
178	김정원
179	김정환
180	김승간
181	김종현
182	김종화
183	김주현
184	김준호
185	김진택
186	김진기
187	김상보
188	김질화
189	김충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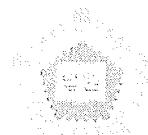
음성 출력용 B



190	김태영
191	김태우
192	김태욱
193	김태호
194	김택승
195	김표진
196	김학래
197	김학섭
198	김황기
199	김현숙
200	김현
201	김현심
202	김현진
203	김철숙
204	김해영
205	김호
206	김호동
207	김호선
208	김호정
209	김봉순
211	김정래
212	김봉식
213	김희경
214	김희보
215	나경민
216	남기백
217	남영호
218	남우섭
219	남철노
220	노구열
221	노철호
222	노현승
223	도현준
224	류경련
225	류의상
226	류창영
227	류종수
228	마충복
229	문강대
230	문경보
231	문병복
232	문상선
233	운상선
234	문순룡
235	문암아
237	안경서
238	안병율
239	박강찬
240	박강원
241	박귀란
242	박기연
243	박남첨
244	박노운
245	박대규
247	박동수
248	박탁구
249	박명희
250	박명희
251	박무균
252	박무섭
254	박명기
256	박봉근
257	박상봉
258	박상우
259	박상인
260	박석환



온라인열람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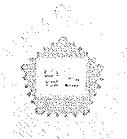


261	박선경
262	박성남
263	박성현
264	박승호
265	박승철
266	박영길
267	박양민
268	박영미
269	박영준
270	박용주
271	박연준
272	박영호
273	박용구
274	박점국
275	박율우
276	박인삼
277	박인숙
278	박재숙
279	박재원
280	박철민
281	박정식
282	박종국
283	박종석
284	박종제
285	박종호
286	박종호
287	박진구
288	박찬수
289	박찬욱
290	박장백
291	박현경
292	박태규
293	박태상
294	박포정
295	박희욱
296	박희수
297	박희연
298	안원문
299	강석기
301	개면식
302	개명운
303	개용봉
304	개법기
305	백숙한
306	백문수
307	백진용
308	년중관
309	변증길
310	사진욱
312	시광주
313	서동석
314	서동성
315	서병율
316	서석수
317	서성률
318	서영진
319	서창수
320	석영희
321	석선경
322	석승원
323	석영진
324	석언체





음성출력용



325	석재원
326	신용배
327	선습생
328	성기준
329	성상기
330	성식진
331	성창호
332	소행구
333	손별조
334	손성호
335	손임학
336	손운승
337	손필율
338	손의문
339	송우복
341	송월영
342	송종중
343	송찬우
344	송재배
345	송종석
346	신길진
348	신동만
349	신상현
350	신성주
351	신승용
352	신윤우
353	신윤호
354	신철호
356	신훈규
357	신재명
358	안병걸
360	안석태
361	안영옥
362	안영호
363	안찬수
365	양경석
366	양경걸
367	양규승
368	양봉주
369	양성숙
370	양수철
371	양영석
372	임창열
374	임학모
375	임상길
376	이민범
377	엄미자
378	오민관
379	오병배
380	오병철
381	오세웅
382	오우정
383	으인숙
384	으대호
385	왕미숙
386	왕윤주
387	우남진
388	우동수
389	유경근
390	유종호
391	유한철
392	유설경
393	유연경
394	유주현
395	유진오
396	유진호



음성 출력용

397	유자규
398	유현수
400	윤영안
401	윤재애
402	윤영로
403	윤여중
404	윤종남
405	윤종택
406	윤진용
407	윤정현
408	윤진석
409	윤태종
410	윤택식
411	윤현우
412	이강동
414	이경우
415	이개봉
417	이광수
418	이광영
419	이광작
420	이광희
421	이구열
422	이금배
423	이기호
424	이길상
425	이남철
426	이ックス
427	이덕정
428	이동규
429	이동연
430	이동열
431	이만복
433	이명조
434	이미경
435	이민자
436	이방희
437	이명우
438	이병원
439	이병운
440	이삼숙
441	이상근
442	이상도
443	이상식
444	이상수
445	이상업
447	이상열
448	이상준
449	이상훈
451	이석인
453	이상율
454	이선원
455	이성호
456	이수만
457	이순중
458	이승근
459	이승재
460	이승호
461	이시영
462	이안액
463	이영식
464	이용중
465	이영천
466	이숙순
467	이한구
468	이용근
469	이용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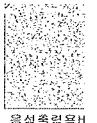


음성출력용



470	이윤선
471	이윤일
472	이윤재
473	이윤희
474	이재인
475	이재혁
476	이장건
477	이정근
478	이정숙
479	이정애
480	이강희
481	이종원
482	이종호
483	이종화
484	이종훈
485	이주명
486	이주철
487	이준희
488	이지태
490	이자호
491	이진주
493	이정현
494	이정희
495	이준숙
496	이준희
497	이태봉
498	이태영
499	이태인
500	이태하
501	이희성
502	이희자
503	이해정
504	이현섭
505	이현숙
506	이현우
507	이호철
509	이희권
510	이희성
511	이희원
512	임동의
513	임민순
514	임민규
515	임문영
516	임세복
517	임영미
518	임옥정
519	임우정
520	임정기
521	임종규
522	임장수
523	임강한
525	임정훈
526	임종택
527	임태수
529	밀효숙
530	장경희
531	장가설
532	장마숙
533	장목희
534	장원비
535	장윤석
536	장재인
537	전해상
538	전녕구
539	전승복
540	전지진





음성 출력용

542	선해근
543	설계범
544	정한암
545	정승철
547	정민설
548	정민숙
549	정병석
550	정병화
551	정봉순
552	정상준
553	정성의
554	정성국
555	정시영
556	정신재
557	정연태
558	정우근
559	정원규
560	정윤희
562	정인희
563	정재규
564	정재호
565	정전영
566	정철선
567	정점숙
568	정종선
569	장동업
570	장진교
571	장상요
572	장질용
573	장필호
574	정해선
575	성홍섭
576	정화술
577	조경호
578	조길영
579	조권칠
580	조귀래
581	조규동
582	조기성
583	조기호
584	조대희
585	조두현
586	조명환
587	조택수
588	조별령
590	조상찌
591	조설월
592	조성의
593	조설운
594	조선주
595	조아현
596	조임민
597	조영선
599	조우설
600	조민규
601	조한백
605	주기노
606	주제문
607	주희경
608	지병관
609	자희영
610	진영도
611	진현식
612	차갑숙
613	차혜열
614	채수오



음성 출력 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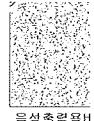
615	천상수
616	천재희
617	천남설
618	천종룡
621	최병국
622	최비
623	최선풍
624	최선장
625	최승원
626	최영란
627	최인빈
628	최정주
629	최용원
630	최율
631	최운열
632	최인철
633	최재경
634	최재조
635	최종원
636	최종용
637	최창기
638	최창기
639	최창운
640	최창용
641	최홍규
642	최한식
643	최희동
644	주경남
645	주부화
646	파윤숙
647	하준율
648	한진수
649	한검여
650	한경희
651	한계준
652	한동원
653	한명아
654	한선봉
655	한상중
656	한승식
657	한영규
658	한일진
659	한윤모
660	한윤석
661	한현선
662	허영구
663	허윤구
664	허진구
665	현규환
666	홍별원
667	홍성렬
668	홍성현
669	홍순용
670	홍영보
671	홍운호
672	홍진희
673	홍학수
674	황강규
675	활동식
676	황병원
678	황서영
679	황석도
680	황연숙
681	황우의
682	황용하
683	황태성



음성 출력용



684	황재윤
685	황호진
686	권남희
합계 637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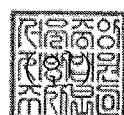
음성출력용

정본입니다.

2018. 11. 27.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원주사보 이선영



판결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이 정본을 송달받은 날(발송송달의 경우에는
발송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상소장을 민사소송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원심법원인 이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
법 제71조의 보조참가인의 경우에는 피참가인을 기준으로 상소기간을
계산함에 유의).

※ 각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번호조회 메뉴를
이용하거나, 담당 재판부에 대한 문의를 통하여 이 문서 하단에 표시된
발급번호를 조회하시면, 문서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